



---

# 국내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식품인증제도 시범사업 운영지침 《 지침번호 2024-01 》

---

2024. 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목 차



<b>I. 일반사항</b>	<b>1</b>
1. 목적	1
2. 대상	1
3. 용어의 정의	1
4. 추진 절차	3
<b>II. 인증신청 접수</b>	<b>3</b>
1. 인증신청 방법 등 개요	3
<b>III. 수출식품 안전성 검사</b>	<b>6</b>
1. 내용	6
2. 시험법	6
<b>IV. 공정정보(이력추적) 관리</b>	<b>6</b>
1. 내용	6
<b>V. 평가 및 인증</b>	<b>7</b>
1. 식품안전국가인증 개발	7
2. 자국생산증명 개발	8
3. 식품인증제도 인증	8
<b>VI. 사후관리</b>	<b>11</b>
1. 인증업체 관리	11
2. 안전성검사기관 관리	12
<b>VII. 별표·별지 및 붙임 목록</b>	<b>13</b>

# I. 일반 사항

## 1. 목 적

「국내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식품인증제도 시범사업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은 식품인증제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세부절차 및 기준을 정한 것이다.

## 2. 대 상

- 1)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수출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3. 용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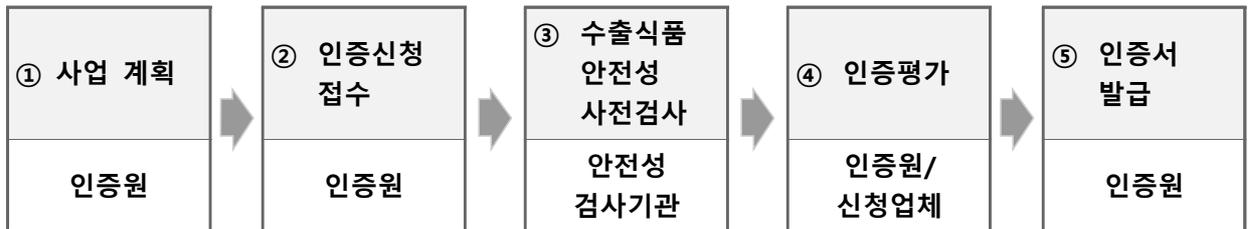
- 1) 식품안전국가인증(Korean Food Safety)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식품안전경영, 식품방어, 식품사기,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 등을 보장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개발한 인증제도로 제품 생산에 대한 이력추적 정보, 수출 전 선(先)검사, 영문증명서 발급 등이 포함된 식품산업계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식품안전종합인증 시스템이다.
  - 2) 자국생산증명(Korean Production) : 자국(한국)소재지 가공장의 안전성, 한국적 가공특성(전통적인 생산·제조법, 품질 등)의 조건을 포함하여 평가·인정할 수 있도록 개발한 인증제도이다.
  - 3) 식품인증제도 시범사업 : 식품안전국가인증, 자국생산증명 운영을 위한 총괄 사업으로 식품안전국가인증, 자국생산증명 평가 및 인증, 수출식품 안전성 사전검사, 홍보사업으로 구성된다.
- 가. 식품인증제도 평가 및 인증 사업 : 식품안전국가인증 및 자국생산증명의 인증 심사 등의 운영을 위한 사업이다.

- 나. 식품인증제도 사후관리 : 식품안전국가인증 및 자국생산증명 사업 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수출식품 안전성 사전검사 : 수출상대국의 식품 수입을 위하여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후 검사성적서, 영문성적서 등을 발급하여 참여업체의 통관단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라. 홍보사업 : 식품인증제도 시범사업의 목적, 내용, 효과 등에 대한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을 말한다.
- 마. 영문성적서 : 수출상대국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바탕으로 안전성검사기관이 영문으로 발급한 성적서이다.
- 4) 식품안전국가인증 인증서 : 식품안전국가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으로부터 발급되는 인증서이다.
- 5) 자국생산증명서 : 자국생산증명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원으로부터 발급되는 인증서이다.
- 6) 자문위원회 : 수출상대국의 식품안전기준 자문, 식품인증제도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자문 등 사업운영을 위한 최고 의결기관이다.
- 7) 식품인증제도 평가단 : 식품안전국가인증, 자국생산증명 인증심사,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해 구성 및 운영되는 조직이다.

## 4. 추진 절차

### 1) 추진절차

가. 식품인증제도 시범사업은 인증신청 접수, 수출식품 안전성 사전검사, 식품안전국가인증 및 자국생산증명 평가, 인증서 발급으로 진행된다.



나. 식품안전국가인증 및 자국생산증명 인증 취득절차는 [붙임1]와 같다.

## II. 인증신청 접수

### 1. 인증신청 방법 등 개요

#### 1) 인증신청

가. 식품안전국가인증 및 자국생산증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별표 1]의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표자 날인 후 메일,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인증원에 제출해야 한다.

#### 2) 신청대상

가.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 및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 수출업체이다.

### 3) 신청자격

가.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원사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을 등록한 업체. 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고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나. 식품인증제도 시범사업 자문회의를 통해 선정된 조미김, 김치류, 라면, 과자 등 제조 업체로 수출 중 또는 준비업체

### 4) 신청제외 대상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대표자) 또는 업체

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대표자)

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또는 업체 (다만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업체,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업체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업체는 제외)

라.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대표자) 또는 업체

### 5) 신청서류 검토

가. 인증원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검토한다.

① 신청업체의 자격 및 구비서류의 적정성

② 신청업체 및 대표자의 신청제외 대상 여부

나. 인증원은 신청서 검토 결과 제출한 서류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에는 즉시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① 신청업체는 수정·보완조치 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② 인증원은 수정·보완을 요구한 기한 내에 해당사항이 보안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 절차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다. 인증원은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제한하거나 평가 및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① 신청 이후라도 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확인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신청을 취소 할 수 있다.

라. 신청업체는 평가 전까지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증원에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마. 인증신청 민원접수 종결 이후에는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업체의 기본사항(신청업체명 변경, 신청업체 대표 변경 등)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증원의 승인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 III. 수출식품 안전성 사전검사

#### 1. 내용

- 1) 안전성검사기관은 원·부재료 및 공정품에 대한 식품위해도 평가와 수출상대국의 기준·규격에 따른 완제품 검사를 실시한다.
- 2) 안전성검사기관은 수출상대국의 식품 수입을 위하여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후 검사에 사용된 시험법과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검사성적서(국문, 영문)를 인증원에 제출한다.
- 3) 안전성검사기관은 신청업체의 수출제품에 대한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후 그 결과를 인증원에 통보한다.

#### 2. 시험법

- 1) 수출식품 안전성 사전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은 수출상대국의 공인 시험법 또는 수출상대국이 인정하는 시험법을 사용한다.
- 2) 시험법은 분석법 검증을 통해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며, 분석법 검증은 안전성검사기관의 내부 절차에 따른다.
- 3) 수출상대국의 공인 시험법이 없거나, 수출상대국이 인정하는 시험법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 IV. 공정정보(이력추적) 관리

#### 1.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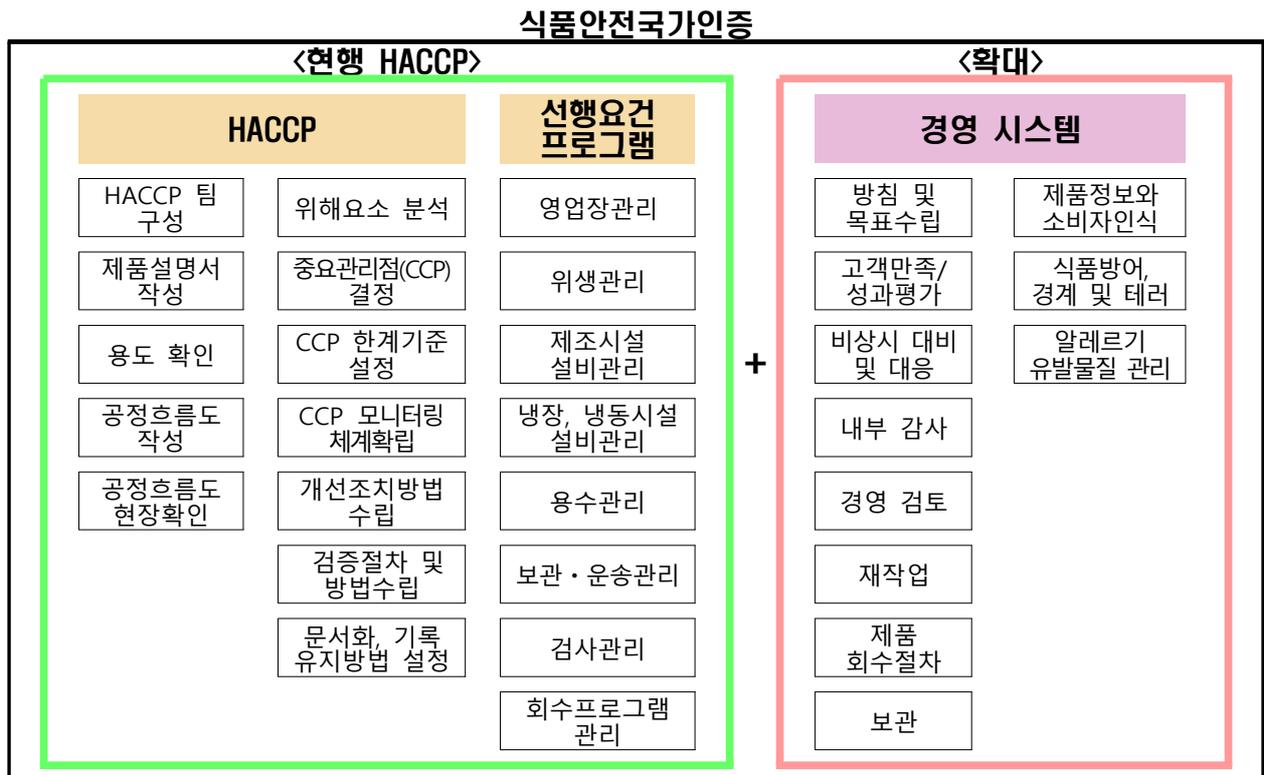
- 1) 인증원은 참여업체 생산제품의 공정정보(이력추적)를 관리하기 위하여 원료입고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의 과정을 확인한다.

- 2) 인증원은 수출식품의 공정정보를 시각화 자료로 구현하기 위해 동영상 촬영 등을 신청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홍보 등의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이 있는 경우 참여업체에게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다.

## V. 평가 및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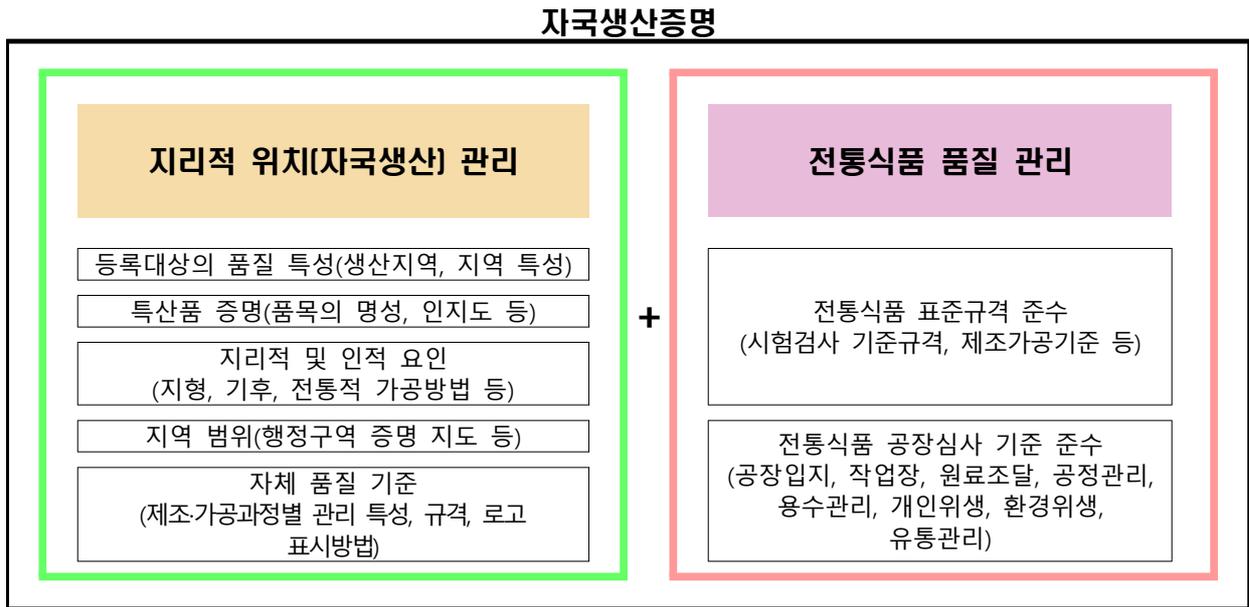
### 1. 식품안전국가인증 개발

-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식품안전경영을 보장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개발한 인증제도로써, 국가가 수출업체의 식품안전이 글로벌 식품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인정한다.
- 2) 식품안전국가인증은 식품안전관리인증(선행요건관리+HACCP관리)과 식품안전경영시스템(FSMS), 식품방어, 식품사기,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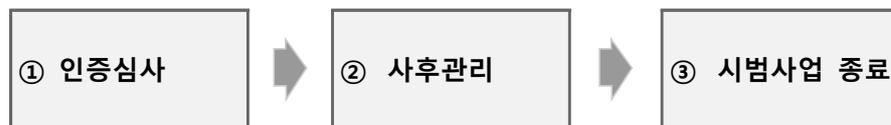
## 2. 자국생산증명 개발

- 1) 자국소재지 가공장 안전성, 한국적 가공특성(전통적인 생산·제조법, 품질, 명성 등)의 인정조건을 포함하여 검증을 위한 평가 기준을 개발한다.



## 3. 식품인증제도(식품안전국가인증, 자국생산증명) 인증

- 1) 인증심사 주기



- 2) 평가단 운영

가. 인증원은 [별표 6, 7]의 식품안전국가인증, 자국생산증명 평가 표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식품 및 축산물 안전 관리인증기준」 제19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도관에 준하는 식품안전국가인증 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3) 인증심사

- 가. 식품안전국가인증 및 자국생산증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별표 1]의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표자 날인 후 메일,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인증원에 제출해야 한다.
- 나. 인증원은 식품안전국가인증 및 자국생산증명 신청업체의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6, 7]의 식품안전국가인증 및 자국생산증명 평가표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평가하며, 평가당시 신청업체가 제출한 자료 등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 수거 및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다. 인증원은 현장조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을 요구한 기한 내에 해당 사항이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품안전국가인증 및 자국생산증명 신청업체의 인증 절차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4) 인증서 발급

- 가. 인증원은 인증 신청을 한 업체가 식품안전국가인증기준 및 자국생산증명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식품안전국가인증 및 자국생산증명 인증서[별지1]를 발급한다.
- 나. 인증원은 수출식품 안전성 사전검사 정보, 공정정보(이력추적) 관리 정보, 식품안전국가인증 및 자국생산증명 평가 정보를 시각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QR코드를 생산하여 인증업체에 제공한다.

## 5) 인증사항 변경·추가

- 가. 식품안전국가인증 및 자국생산증명 적용업체로 인증된 자가 중요관리점을 추가·삭제·변경하는 등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소재지를 이전(이 경우에도 식품안전국가인증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하는 때에는 변경 또는 이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인증원은 인증사항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검토나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다. 인증원은 확인결과 식품안전국가인증을 인증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증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 라. 인증원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평가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보완을 요구하거나 변경절차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6) 인증서 유효기간

- 가. 식품안전국가인증 및 자국생산증명의 인증서 유효기간은 시범사업 종료일 전 생산된 제품의 소비기한에 한한다. 시범사업의 종료일은 사업종료전 30일 이내에 인증원이 인증업체에 통보하도록 한다.

## VI. 사후관리

### 1. 인증업체 관리

#### 1) 평가단 운영

가. 인증원은 식품안전국가인증 준수 여부를 조사·평가하기 위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9조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지도관에 준하는 평가인들로 식품안전국가인증 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2) 조사·평가

가. 인증원은 인증업체에 대하여 식품안전국가인증 및 자국생산증명 준수 여부를 정기 조사·평가할 수 있으며, 조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인증 이후 운영해온 식품안전국가인증 및 자국생산증명 관리 운용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인증원은 평가단의 조사·평가 결과가 기준에 적합한 업체로 판정되었으나 일부 사항이 미흡하여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정·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인증취소를 명할 수 있다.

#### 3) 인증서의 반납

가. 식품안전국가인증 및 자국생산증명 인증취소를 통보 받은 업체 또는 영업체 폐쇄처분을 받거나 영업을 폐업한 업체는 인증서를 인증원에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업체가 반납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인증원은 인허가기관에 폐업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나. 인증업체가 인증서 반납을 희망하는 경우는 [별표 5]의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표자 날인 후 메일,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인증원에 제출하며 인증원은 인증서 반납처리를 한다.

#### 4) 우대조치

가. 식품안전국가인증 및 자국생산증명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다음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① [붙임2]의 인증표시를 광고에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 ② 인증원에서 제공한 QR코드를 수출제품에 표시하도록 허용한다.
- ③ 기타 식품안전국가인증, 자국생산증명 활성화 및 식품 안전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안전성검사기관 관리

- 1) 인증원은 과제의 중간점검이나 수행결과의 검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에 대하여 지도 점검할 수 있다.
- 2) 검사기관은 인증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또는 완료된 시험 현황,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별표·별지 및 붙임 목록

【별표 1】 식품안전국가인증 및 자국생산증명 인증 신청서 .....	14
【별표 2】 식품인증제도 시범사업 참여 신청 구비서류 목록 .....	16
【별표 3】 신청업체 사업 참여 제한기준 .....	17
【별표 4】 식품안전국가인증 및 자국생산증명 인증사항 변경신청서 .....	18
【별표 5】 식품안전국가인증 및 자국생산증명 인증서 반납 신청서 .....	20
【별표 6】 식품안전국가인증 평가표 .....	21
【별표 7】 자국생산증명 평가표 .....	35
【별지 1】 식품인증제도 시범사업 인증서 .....	36
【붙임 1】 식품인증제도 시범사업 인증서 취득절차도 .....	37
【붙임 2】 식품인증제도 시범사업 인증로그 .....	38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국내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식품인증제도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의 제공 동의를 구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항 목	주민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수집목적	전자계산서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수집근거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 목	업소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팩스번호, 주소, 이메일
수집목적	국내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식품인증제도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 「식품위생법」 제48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및 제44조, 「사료관리법」 제16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보유기간	10년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을 기준으로 보존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심사일정, 결과통지 및 법적사항 알림 등 정보제공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필수사항)

제 공 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교육청, 전국 지방자치단체
제공목적	법령 등에서 정하는 공공기관 소관업무 수행 실적 보고
제공항목	업소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팩스번호, 주소, 이메일
보유기간	10년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을 기준으로 보존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보제공에 따른 이익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년    월    일

동의자    업    체    명 : \_\_\_\_\_  
                  성                   명 : \_\_\_\_\_ (서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중

【별표 2】

**식품인증제도 시범사업 신청 구비서류 목록**

번호	제출서류	비고
1	제품사진	
2	상품제안서 또는 상품설명서	국문, 영문
3	품목제조보고서(국문, 영문)	국문, 영문
4	제조공정도	
5	원부재료 목록(공급처명, 공급처 원산지 포함)	성분분석표 제출
6	기 수출실적(최근 3년)	실적 없는 경우 해당없음
7	영문위생증명서	해당 지방식약청에서 발급
8	라벨(현지화)	최소 현재 국내용 라벨 샘플
9	HACCP 인증 또는 HACCP Plan(식품안전관리인증 계획서)	국문, 영문
10	회사조직도(경영진, 사무종업원 및 제조공장 종업원수 포함)	
11	회사 연혁	
12	최근 3년 총매출현황	

【별표 3】

## 신청업체 사업 참여 제한기준

제 한 사 유	제 한 기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이다.</li><li>◦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현장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이다.</li><li>◦ 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한 경우이다.</li></ul>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li><li>◦ 정부출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및 목적 외 사용한 경우</li><li>◦ 인증서, 관련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이다.</li></ul>	5년

\* 신청업체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진행하는 과제는 취소된다.

**【별표 4】**

**식품안전국가인증 및 자국생산증명 적용업소  
인증사항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일
-------------	-----

신청업체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인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계산서 발급용)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장 소재지 (행정구역상 지, 번의 변경은 제외)		
중요관리점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		

변경사유

분실사유

년      월      일

신청업체

(서명 또는 인)

아래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를 숙지하였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국내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식품인증제도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의 제공 동의를 구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항 목	주민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수집목적	전자계산서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수집근거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 목	업소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팩스번호, 주소, 이메일
수집목적	국내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식품인증제도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 「식품위생법」 제48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및 제44조, 「사료관리법」 제16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보유기간	10년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을 기준으로 보존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심사일정, 결과통지 및 법적사항 알림 등 정보제공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필수사항)

제 공 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교육청, 전국 지방자치단체
제공목적	법령 등에서 정하는 공공기관 소관업무 수행 실적 보고
제공항목	업소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팩스번호, 주소, 이메일
보유기간	10년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을 기준으로 보존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보제공에 따른 이익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년    월    일

동의자    업    체    명 : \_\_\_\_\_  
                  성                   명 : \_\_\_\_\_ (서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중



【별표 6】

## 식품안전국가인증 평가표(내용생략)

### I. 공통사항

#### 1. 회사(사업장)현황

신청 업체	(1)영업허가 (신고) 번호				(2)영업허가 (신고) 연월일				
	(3)회사명				(4)전화번호				
	(5)소재지	본 사							
		공 장 (사업장)							
	(6)대표자 성명				(7)생년월일				
	(8)적용식품 (유형/품목명)				(9)지하수 사용 (○/×)				
심사 대응자	(10)직위			(11)성명					
면적 (m <sup>2</sup> )	(12)작업장 (조리장)			(13)보관소					
	(14)실험실			(15)기타					
	(16)합계								
작업장 (조리장) 의 종류	(17) 원료처리 실	(18)제조가 공실(조리실)	(19) 충전실	(20) 포장실	(21) 검사실	(22) 보일러실	(23) 일반·청결 구역 구분	(24) 기 타	
평가 (○/×)									
작업인원 (명)	(25)제조(조리) 관리부서			(26)검 사 관리부서					
	(27)기 타 작업원			(28)합 계					

【별표 7】

**자국생산증명 평가표(내용생략)**

【별지 1】

식품안전국가인증 인증서 양식

# CERTIFICATE

## KOREAN FOOD SAFETY

CERTIFICATE NO. : 2024-0326

Representative : HONG GIL DONG  
Name of Facility : HACCP KIM CO., LTD  
Address : 156, OSONGSAMYUNG-RO, OSONG-EUP, CHUNG-JU, CHUNGCHEONGBUK-DO, KOREA  
Product Name : Delicious HACCP laver  
Food Item(type) : Seasoned laver  
Exporting countries : United States of America



We certify that the food (Pulmuone Kimchi/Kimchi) manufactured by the company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National Food Safety Certific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Business Operating Guidelines (2024-01) of the Korea Agency of HACCP Accreditation and Services under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of Korea.

Certification specification: HACCP System,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Food Defense Management, Food Fraud Management, Allergen Management, Supply Chain Management

\_\_\_\_\_  
DATE SIGNATURE



자국생산증명 인증서 양식

# CERTIFICATE

## KOREAN PRODUCTION

CERTIFICATE NO. : 2024-0326

Representative : HONG GIL DONG  
Name of Facility : HACCP KIM CO., LTD  
Address : 156, OSONGSAMYUNG-RO, OSONG-EUP, CHUNG-JU, CHUNGCHEONGBUK-DO, KOREA  
Product Name : Delicious HACCP laver  
Food Item(type) : Seasoned laver  
Exporting countries : United States of America



We certify that the food (Pulmuone Kimchi/Kimchi) manufactured by the company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Domestic Production Certific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Business Operating Guidelines (2024-01) of the Korea Agency of HACCP Accreditation and Services under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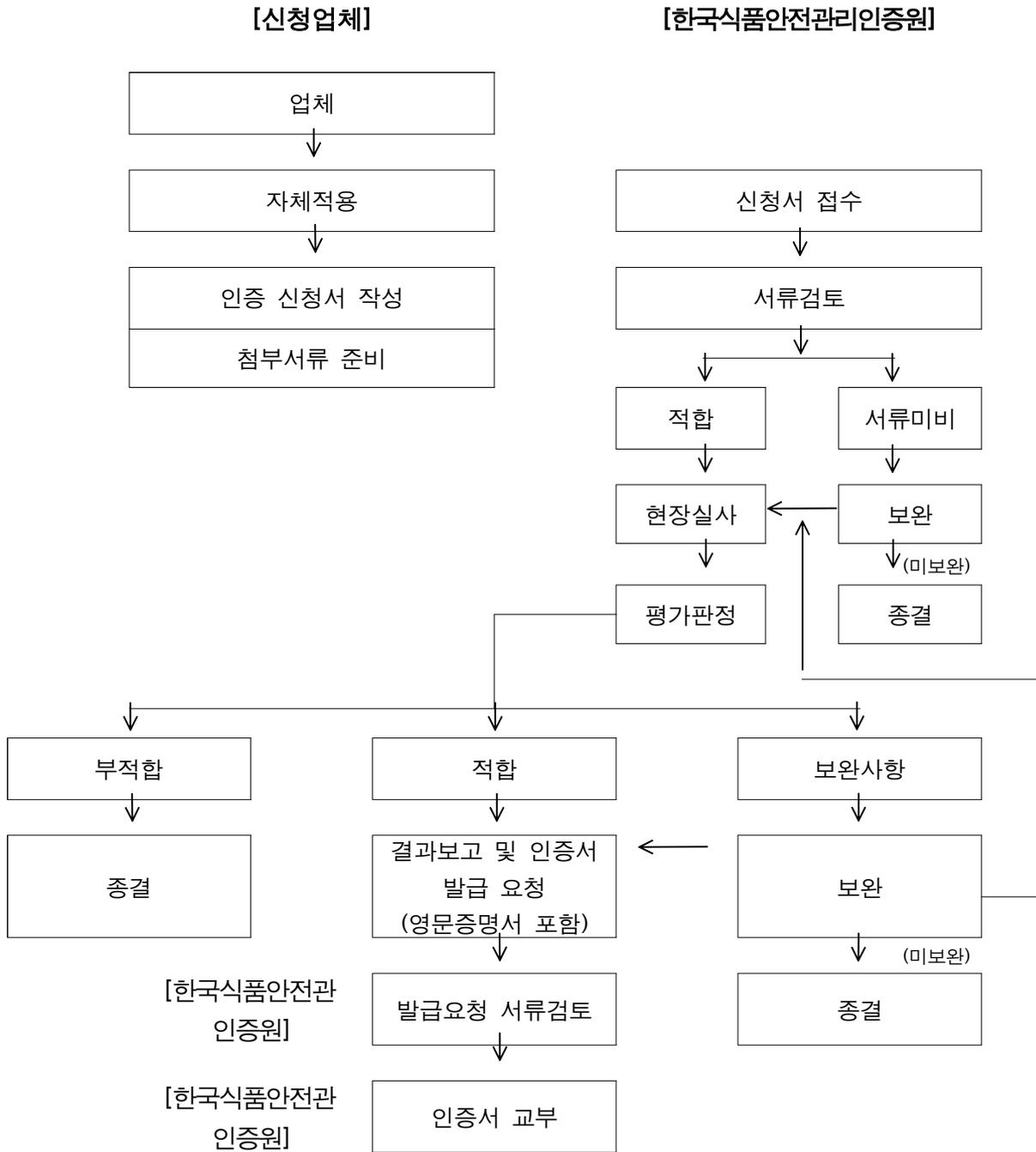
Domestic production certification: Evaluation system including conditions of certification of production in Korea and Korean processing characteristics (traditional production, manufacturing, quality, etc.)

\_\_\_\_\_  
DATE SIGNATURE



【붙임 1】

## 식품인증제도 시범사업 인증서 취득 절차도



【붙임 2】

베이직 로고



베이직 엠블럼



권장 최소사이즈



컬러 시스템 \_ 인쇄 또는 웹/모바일 등 매체에 따른 컬러 사용 규정



CMYK / RGB 색상규정

	C 0	M 100	Y 100	K 0
	R 230	G 0	B 19	
	C 100	M 70	Y 0	K 0
	R 0	G 78	B 162	

별색규정 (PANTONE COLOR)

	PANTONE 186C
	PANTONE 293C

컬러 시스템 \_ Mono Color로 사용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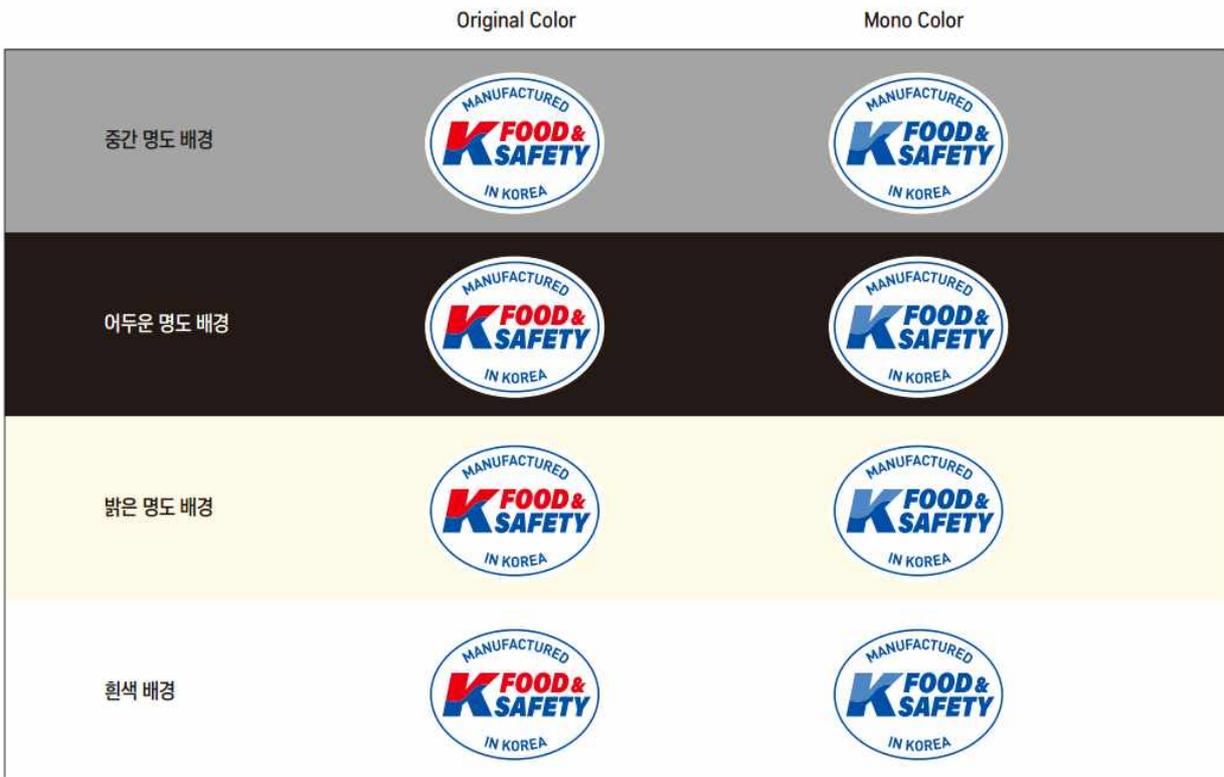
Mono Color 사용 규정

	Mono Color Original
	Mono Color Original 70%

컬러 사용 예시 \_ 태극 컬러 아이덴티티를 반영할 수 있는 Original 컬러 사용을 권장, Mono Color에 한해서 환경에 따라 다양한 컬러 사용 가능



배경 명도에 따른 사용 예시 \_ 배경 명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사용



사용 금지 규정 \_ 엠블럼의 형태 및 컬러, 사용 기준을 훼손하는 경우는 금지됨

